

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 제3항 및 제4항, 「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가 다음과 같이 집회됨을 공고합니다.

1. 집회일시 : 2024년 1월 31일(수), 10:00
2. 집회장소 : 양양군의회 본회의장(2층)

2024년 1월 23일

양양군의회 의장 오 세 만

